


| | | | |
|---|-------------------------------------|------|-------------|
|  | <h2 style="margin: 0;">제규정관리규정</h2> | 규정번호 | 3-1-20 |
| | | 제정일자 | 1997.03.01. |
| | | 개정일자 | 2026.01.01. |
| | | 개정차수 | 4차 |
| | | 소관부서 | 전략기획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대학의 제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학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 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제규정의 형식

제4조(제규정의 편성)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하되, 규정문 중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총칙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
2. 본칙 : 기본사항 또는 지침, 절차
3.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규정과의 관계 등

제5조(형식) ①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 ② 장, 절, 조, 항 및 호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기는 항은 ①②로, 호는 1,2로 표시하고, 호 이하는 가, 나로 표시한다.
- ③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다.
- ④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조문에는 그 내용을 표기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서식 등 [별표]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6조(입안 절차) ① 규정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초안을 발의한다.

- ② 제1항의 초안이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입안된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일정기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④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심의한다.
- ⑤ 제규정의 입안,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업무소관 부서에 입안, 발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소관부서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보직명 변경의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은 직제개편 시행일로 한다.

제7조(제정권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개정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효력) ①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정관 또는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9조(주관부서) 제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10조(관리) ①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제정,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을 제규정대장[별지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원본은 보존한다.

②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제정,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 제규정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제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체제와 형식에 벗어난 규정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